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「동물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‘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’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동물이 퇴역(은퇴)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봉사동물의 정의를 규정하고(안 제2조제16호 신설), 서울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(안 제7조의5 신설),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한 동물의 입양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(안 제25조제5항 신설)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